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126호 |
| 의결연월일 | 2021. 09. 28. |

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09월 16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09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2021년 09월 2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 「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」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제조, 위탁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하고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 처리의 투명성을 높여려는 목적으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전자수입증지의 정의(안 제2조, 제5조)
-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(안 제3조)
- 전자수입증지의 사용(안 제4조)
-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 정산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